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
2010년 9월 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서덕호팀장(02-2110-4621), 이응대사무관(4623)

경제자유구역 제도적 기반 정비 착수

- 지경부, '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'의 후속조치로 「경제자유구역특별법」 개정안 입법예고(9.8)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: 최경환)는 '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'의 후속조치로, **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안**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임

□ 이번 법 개정은 **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·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대폭 정비**하기 위한 것으로서, 주요 개정내용은,

① 기본계획 수립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

- 경제자유구역의 **중장기 비전과 발전방향을** 제시하기 위해 지경부장관이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(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3 신설)

-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여타 개별법 규정이 서로 상이한 경우의 **법적용 관계를 명확히** 함(안 제3조의2 신설)

② 지정요건 구체화 및 지정 후 사후관리 강화

- 경제자유구역 **지정요건을 구체화**하여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정요청을 억제하고 지정단계부터 개발촉진을 담보(안 제5조 개정)

- **사업시행자 지정권자, 자격요건, 지정해제 및 대체지정 등에** 관한 근거규정 보완(안 제6조의4 신설)

- **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사유를 명확**히 하여 개발지연 및 관리 부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(안 제7조 개정)

-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**초과 개발이익의 일부 재투자** 의무화(안 제15조의2 신설)

- 지경부장관에게 **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·감독** 권한 부여(안 제30조의2 신설)

- 사업시행자의 **실시계획 미 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** 도입(안 제33조의3 신설)

③ **조기개발 유인 및 외자유치 촉진**

- 개발계획에 수용토지세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토지보상 가능 시점을 **실시계획 승인·고시일 → 개발계획 승인·고시일로** 앞당김(안 제6조제15호, 제13조제2항 개정)

- 경제자유구역내 **산업단지 개발 시 산입법령에 따른 개발절차를 준용**하도록 절차 개선(안 제8조제2항, 제9조제5항, 제15조의3, 제18조 단서 신설)

- 경제자유구역 내 **산업·물류·연구시설용지의 일정비율(10%) 이상을 외투기업을 위한 임대 또는 분양용지로** 공급토록 함(안 제9조의8 신설)

- 해외 유수병원 유치 촉진을 위해 **외국병원 종사자 자격 및 외국인전용약국 이용자 대상 확대**(안 제23조 개정)

-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**지경부장관이 연 1회 구역별로 성과평가** 실시(안 제30조의3 신설)

④ 구역청의 자율성·전문성 강화

- 구역청장은 **총 정원의 30%까지** 특정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·운영하거나 계약직·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의4 개정)

- 구역청 회계는 해당 **시·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관리**토록 함(안 제27조의6 신설)

- 구역청의 원스톱 서비스체제 강화를 위해 **실시계획 승인, 개발계획 변경요청 등의 사무를 구역청장에게** 이양 또는 위임(안 제30조 개정)

⑤ 기타

- 경제자유구역위원회(위원장: 지경부장관)의 **관계부처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→차관급으로** 조정(안 제25조 개정)

□ 지식경제부는 **9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**하고, 이후 법제처 심사, 차관·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**이르면 11월초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**한다는 계획임.

< 첨부 > 신·구조문 대비표